

「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양진오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국가와 시(市)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추모·선양하고, 그에 합당한 예우와 경의를 표함으로써 국가와 시에 대한 소속감을 증대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승조당 감면 대상 신설 (안 제10조제2항제4호)
- 승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 (안 제19조의2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3조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「구미시 자랑스러운 구미사람대상 조례」 제3조, 제11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송조당 감면 대상 신설 및 송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송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은 유공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우리시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한편, 송조당 내 유공자 별도 봉안 구역 신설이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